

		<h1>보도자료</h1> <p>2021. 12. 7.(화) 배포</p>			
		<p>2021. 12. 8.(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 8.(수) 06:00 이후 보도 가능</p>			
담 당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정책협력팀	담당자	팀 장	전영식 (☎ 044-203-7089)	
	사무관		김경화 (☎ 044-203-7081)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팀 장	박진하 (☎ 044-203-708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사무관	김연갑 (☎ 044-203-7074)	과 장	손동빈 (☎ 044-850-6105)	
			장학사	송경원 (☎ 044-850-6114)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 ◆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사무·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입법 시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근거 마련 위한 관계법률 개정
 -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12월 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자치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

- 이번 교자협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주년을 기념하고 현 정부 교육자치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살피서 미래 교육자치의 원칙과 방향을 설계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보고안건) ①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안건 추진경과, ②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
(심의안건) ①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②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또한, 그동안 교자협에서 심의·의결한 안건들의 현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도 확정하였다.

□ 심의안건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 및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5개의 과제(안)를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의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을 명확화하고 사무배분 원칙을 담은 법령 개정을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의무화하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 ③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지원청의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시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다.

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의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 다음으로,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을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관련 법률개정을 통해 교육과정 분권체제를 확립한다.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찾고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심의·의결하였다.

□ 유은혜 공동의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

□ 최교진 공동의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자치 실현에 많은 과제가 아직 남아있음을 확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붙임】 1.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요

2.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 안건(요약)



붙임 1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요

- 일 시 : 2021. 12. 7.(화), 15:30 ~ 17:30
- 장 소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1층)
- 위 원 : 공동의장 2명, 교육감 5명, 교육부 관계관 2명, 민간위원 3명 총 12명

구분	성명	직위	구분	성명	직위
공동의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공동의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당연직 위원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위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위촉 위원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대표 변호사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감사)
	허승대	서연초등학교 교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 공동 간사: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안순억 부단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민호 사무국장

□ 세부계획

시 간	주요 일정	비 고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 및 안내 	-
15:30~1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및 인사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인사말까지 공개
15:40~1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보고 및 심의 【보고 안건】 1호)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의결 안건 추진경과 2호)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 【심의 안건】 1호)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 2호)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비공개
17:2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무리 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심의안건 1]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 강화방안의 성과와 과제(안)

- 제안 : 교육부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제안
- 제안 배경
 - 차기 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출범 시 지속적인 교육자치 추진을 위한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함
- 기본 방향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학교 민주주의 추진
- 추진 경과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운영('17.8.~)
 - '교육자치 및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수립('17.8.28)
 -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수립('17.12.12)
 - 교육자치 법령정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0.9.~) 및 법령개정 추진
- 주요 성과
 - 교육자치정책협의회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설치·운영 및 국교위 설치법 제정 등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시도교육청·학교의 재정운영, 인사운영,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교육현장의 자치역량 확보 및 자치문화 확산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비율 확대(96→97%)(특별교부금 4→3%) ·국가시책사업 지원방식을 하향식 → 상향식 운영으로 변경 ·지방교육재정 분석평가 지표 축소 및 절차 간소화
인사업무	·교육장 및 국장급 이상 장학관 징계권 이양 ·지방공무원 정원 자율책정 기준 확대(5급이하 → 4급이하)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지원 사업 폐지
기타행정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교육청 자체평가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학부모 의견제시 기회 확대(시행령 개정)

- 교육자치 법령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20.9.~, 11회 개최)하여 교육자치를 촉진하는 법령 제·개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131개 과제를 발굴하여, 그 중 125개(95.4%) 정비 완료('21.9. 기준)
- 학교운영위원회 중요 심의사항에 대한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확대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학부모 교육참여 활동이 확산되도록 시도(지역)학부모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부모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등 학부모·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한 계

-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법령 개정 미흡으로 학교 자치의 결정권 확대에 한계
- 국가와 지방의 사무범위와 역할에 대한 논란 지속 및 교육행정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에 한계
-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낮은 현장 체감도
 - ※ 교육기관 종사자의 81.0%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46.0%)과 학부모(53.0%) 인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교육부 조사, '20.10)
- 유·초·중등교육은 그 권한·사무 행사 방법을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위임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실행과 책임 주체에 대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갈등 여지 상존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불투명하고,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 등에 대하여 교육 현장으로부터 지속적 개선 요구

< 지방교육자치 강화 과제(안) >

1 교육분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사무-자치사무 구분 명확화

- 유·초·중등교육의 사무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임을 법령으로 명확화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입법 추진 방안 등 논의
- ② 교육자치 시대의 새로운 교육과정 분권 체제 확립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용어로 법률 정비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 마련
- ③ 자율적·주체적 인성함양정책 추진을 위한 인성교육법 개정
-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수립 및 변경 시 처리방안, 연수계획을 포함한 개정 또는 전면개정 등
- ④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 협력을 저해하는 법률조항 개정 추진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개정 시기와 입법 방안은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부처 간 협의 및 국회 협조 요청

② 교육과정의 자율성 강화

- ① 범교과 교육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
- 각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범교과 학습주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의무적인 교육 및 점검 이행 결과 제출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에 대한 일몰제 부여 등 특별법 제정 방안 검토
- ②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적정성 및 침해 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업무 운영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개정

3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①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제화

-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속 추진
-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 제정 추진

② 교육지원청의 자치여건 조성

- 교육부 연구용역과 시범교육청 운영을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자치 권한 확대와 역량 강화방안 마련

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배분 집행의 적정성 모색

①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논의

-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국가시책 사업 등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②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수요에 대한 재정 집중 투자

- 학습결손 지원 등 교육회복, 돌봄 부담 완화 등 시급한 교육 수요에 대해 지방교육재정 집중 활용

5 지방교육자치 인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

① 지방교육자치 인식 제고

- (교육부) 조정·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진행 및 공유, 포럼개최 등
- (시도교육청) 교육청별 우수사례 발굴, 교직원 대상 연수과정 확대

②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및 책무성 제고

- (교육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타 부처 협력 등 중재적 역할 적극 수행

- (시도교육청) 교육적 의사결정의 자주성과 전문성 확보 장치 마련
 - (학교) 학교 조직, 교육과정, 인사, 시설, 재무관리 영역에서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
- ③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
- 학교가 학생중심 교육활동을 위해 자율적,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TF 구성하여 방안 마련
- ④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일반자치 간 인사교류 활성화
 - 교류 직위에 대한 수당, 평정 가점 등 인사·재정상 인센티브를 인사 관련 교육규칙, 지침 등에 관련 사항을 반영 추진

[심의안건 2]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제안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제안

□ 추진 경과

○ [1단계] 제9~11차 법령정비전문위원회 운영('21.8.~11.)

- 「교육자치 및 분권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방향」 검토

○ [2단계] 시도교육감협의회-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협의(11.8.~)

- 「초·중등교육법」, 「지방분권법」, 「인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 마련

- 교육자치와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해 지속적인 개정 노력

□ 법령 정비 주요 내용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특수교육법」 개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용어로 법률 정비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 개정 추진